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72
----------	-----

제출연월일 : 2008. 9. 11.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폐지이유

조례의 주요내용이 의무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례를 적용할 의무직공무원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관계법령)

□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제정) 1982-03-13 조례 제 1124호
(일부개정) 1983-03-03 조례 제 1279호 (제명변경)
(일부개정) 1985-04-29 조례 제 1440호
(전부개정) 1986-05-01 조례 제 1490호 (제명변경)
(전부개정) 1989-01-01 조례 제 1752호 (제명변경)
(일부개정) 1994-02-23 조례 제 2356호 (제명변경)
(일부개정) 1995-01-01 조례 제 2425호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에의함)
(일부개정) 1998-01-17 조례 제 2743호
(전부개정) 2002-04-24 조례 제 310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9의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의사, 지방전임계약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지방전임계약직 의사 : 별표 2의지급 구분표

부 칙 (조례 제3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지역등급	전문의	일반의	적 요
갑지	554,000	471,000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지방전임계약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근무년수별 \ 등급별	가 급	나 급
5년이상	880,000이하	585,000이하
4년이상	875,000이하	580,000이하
3년이상	870,000이하	575,000이하
2년이상	865,000이하	570,000이하
2년미만	860,000이하	565,000이하

비고 : 근무년수는 시·도, 시·군·구 및 산하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한 년수를 합산한다.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20875호]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7.12.31, 1992.1.24>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의료업무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 근무하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직렬공무원 및 병원선승선근무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약무직렬 : 월 70,000원 • 간호직렬공무원 : 월 50,000원

□ 의 료 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77조 (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